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8.

발 의 자 : 최보윤 · 안철수 · 김상훈

김 건 · 박상웅 · 윤상현

신성범 · 이종배 · 이달희

김선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마약류 오남용 여부 등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의를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더하여 심의위원회가 보다 많은 전문가로부터 마약류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, 자체적인 조사·연구를 실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.

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마약류의 오남용 여부에 관한 사항,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·투약 기준에 관한 사항, 마약류 중독 치료 및

사회재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80명
까지로 확대하며, 심의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
·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 및 전문가
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,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
록 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(안
제5조의3).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하기”를 “조사·심의하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조치기준”을 “조치기준 및 오남용 여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심의위원회”를 “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”로 한다.

4.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·투약 기준에 관한 사항

5.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

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아

년 위원으로 한다.

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(職)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·연구를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 또는 마약류별 전문가 협의체를 둘 수 있다.

⑦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⑧ 위원장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약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의3(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심의하기</u>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(이하 “ <u>심의위원회</u> ”라 한다)를 둔다.	제5조의3(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) ① ----- <u>조사·심의하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<u>조치기준</u> 에 관한 사항	1. ----- -- <u>조치기준 및 오남용 여부</u> -- --
2.·3. (생략) <u><신설></u>	2.·3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4. <u>의료용 마약류의 처방·투약 기준에 관한 사항</u>
<u><신설></u>	5. <u>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</u>
4. (생략)	6. (현행 제4호와 같음)
② <u>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된다.</u>	② <u>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
<u><신설></u>	③ <u>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각각 식품의약품안</u>

③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④ 그 밖에 심의회위원회의 운영

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⑤ 심의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(職)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·연구를 하기 위하여 심의회위원회에 연구위원 또는 마약류별 전문가 협의체를 둘 수 있다.

⑦ 심의회위원회는 심의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⑧ 위원장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약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⑨ ----- 심의회위원회 및 분과

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	<u>위원회</u> ----- -----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